

석좌교수 운영세칙

제정 2000. 1.14	개정 2016. 3.16
개정 2001. 6. 1	개정 2017. 7. 1
개정 2006.11.16	개정 2020.10.16
개정 2021. 6. 1	

제 1 조(목적) 이 세칙은 본 대학 학칙 제72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의거 포항 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“이라 한다) 석좌교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① 석좌교수는 외부출연금 또는 대학 재원을 바탕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에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. (개정: 2017.7.1.)(개정: 2020.10.16.)

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석좌교수가 임기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Honor 석좌교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, 그 임명 절차는 따로 정한다.(신설: 2020.10.16.)

제 3 조(종류) ① 석좌교수는 정부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에 의한 출연석좌교수와 대학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대학석좌교수로 구분한다. (개정: 2006.11.16.)(개정: 2016.3.16.)(개정: 2017.7.1.)

② 출연석좌교수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젊은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. (신설: 2006.11.16)(개정: 2016.3.16)

③ 출연석좌교수의 경우에는 출연자의 명의를 붙일 수 있다.

④ 대학석좌교수는 자격에 따라 POSTECH석좌교수와 POSTECH초빙석좌교수로 구분한다. (개정: 2016.3.16)

제 4 조(자격) ① 석좌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이거나 해당분야 우수학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 (개정: 2006.11.16.)(개정: 2016.3.16)

② POSTECH석좌교수는 본 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고, POSTECH초빙석좌교수는 국내외 저명학자 또는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. (개정: 2016.3.16)

③ 젊은석좌교수는 50세 미만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 (신설: 2006.11.16)(개정: 2016.3.16)

제 5 조(임면) ① 석좌교수는 석좌교수추천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다만, 특정협약에 의한 석좌교수는 협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(개정: 2006.11.16.)(개정: 2017.7.1.)

② 석좌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분야 주임교수 추천서(개정: 2006.11.16)
2. 이력서
3. 필요시 국내외 해당 학문분야 권위자 3인 이상의 추천서(개정: 2006.11.16)

제 5 조의2(석좌교수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석좌교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석좌교수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(신설: 2006.11.16.)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신설: 2006.11.16)(개정: 2021.6.1)

1. 석좌교수 후보자 추천
2. 석좌교수의 임기에 관한 사항
3. 석좌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

제 6 조(임용기간)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Honor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젊은석좌교수의 경우 만 50세가 되는 학기말까지, 이외 출연석좌의 경우 정년까지로 한다.(신설: 2020.10.16.)

제 7 조(처우) ① 본 대학은 석좌교수에게 제급여, 연구비, 행정간접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세부조건은 각 사안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(개정: 2017.7.1.)

② 총장은 석좌교수가 퇴직, 휴직, 파견,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 8 조(해임) 총장은 석좌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
2.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

제 9 조(운영경비)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석좌교수제도를 위한 출연기금, 대학재원 및 기타외부지원금으로 한다. (개정: 2017.7.1.)

제10조(출연기금의 운용)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출연기금운용책임자) ① 기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책임자를 둔다.

② 기금운용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기금운용책임자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운용책임자는 기금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출연기금의 집행) ① 석좌교수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금의 과실 한도내에서 시행

한다. 다만, 기금의 출연자가 해당 기금을 원금소멸형기금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집행할 수 있다. (개정: 2017.7.1.)

② 기금집행책임자는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월 14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전 규정인 석좌교수 운영규정은 이 세칙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개정·시행하며, 이 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0년 10월 10일부터 개정·시행하며, 이 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3-2-7~4

부 칙

이 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